

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① 신고인	성명
	주소 (전화번호 :)

② 일반동산문화유산 종류	③ 명칭	④ 수량
⑤ 재 료	⑥ 구조·형태	⑦ 크기

⑧ 현재 상태

⑨ 발견 일시

⑩ 발견 장소

⑪ 유래 또는 전설

⑫ 발견 경위

⑬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

첨부서류	1.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 1부 2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각 1부(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유의사항	1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 2.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,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.

작성 방법

- ① 신고인
 -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.
 - 발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.
- ② 일반동산문화유산 종류: 도기·자기, 지·의류, 철기, 석기, 목기 등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.
- ③ 명칭: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명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적습니다.
- ④ 수량: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(예: 자기-3점 / 철기-2점 등)
- ⑤ 재료: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흙, 돌, 철, 나무, 종이, 천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⑥ 구조·형태: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모양이 파편인지 온전한 형태인지를 구분하고, 모양새와 구조에 대해 적습니다.
- ⑦ 크기: 가로, 세로,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, 부정형(不定形)인 경우 대략적인 크기를 적습니다.
- ⑧ 현재 상태: 표면의 훼손 상태,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태, 발견 시의 상태 등을 적습니다.
- ⑨ 발견 일시: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.
- ⑩ 발견 장소: 발견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(주소 및 위치)를 적습니다.
- ⑪ 유래 또는 전설: 발견한 곳에 대한 기존의 구전(口傳) 내용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.
- ⑫ 발견 경위: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하게 된 배경, 방법, 사유 등을 적습니다.
- ⑬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